

最近의 經濟·財政動向과 OECD 諸國의 稅制改革 推移

韓國租稅研究院

目 次

I. 最近의 經濟動向	3
1. 海外 經濟動向	3
2. 國內 經濟動向 및 1995年 展望	8
II. 稅收 및 財政動向	14
1. 稅收動向	14
2. 財政動向	19
3. 綜合的 評價	23
III. OECD 회원국의 最近 稅制改革 動向	24
1. 稅制改革의 추진방향	24
2. 租稅負擔率 및 租稅構造	25
3. 個人所得稅	30
4. 法人所得稅	32
5. 社會保障稅	34
6. 附加價值稅制	35
7. 向後 展望	36

I. 最近의 經濟動向

1. 海外 經濟動向

가. 개관

- OECD 국가의 成長率은 1994~95년에 각각 2.8%와 2.9%, 그리고 1996~99년에는 2.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WEFA).
- 西유럽은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지만 東유럽은 아직도 불확실함.
 - 東유럽 중 발틱 국가와 폴란드, 체코 등은 成長勢인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은 減少勢이며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은 恢復局面에 있음.
-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계속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일본경제의 회복,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역내 교역의 증가와 내수의 역할 증대, 사회간접자본 투자증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와 필리핀도 낮은 물가상승 속에 경제회복이 시작되었음.
 - 中南美 제국은 경제개혁이 성과를 거두면서 브라질을 선두로 빠른 성장(94년 3.1%)을 보이고 있고 물가도 안정되어 있음. 다만 자본채를 중심으로 輸入需要 증대로 인해 經常收支는 赤字를 지속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국가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

나. 國家別·地域別 經濟動向

1) 美國¹⁾

- 최근 失業率이 6.5%에서 6%로 감소하고 製造業 稼働率이 82%에서 84%로 증가하였으며 Core CPI 증가율은 3% 이내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달러화의 弱勢와 構造調整으로 인한 輸出과 設備投資의 호조, 自動車 販賣增大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94년 상반기중 成長率은 3.9%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경기변동상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고 物價不安 요인은 아직 없음.
 - 국방비 감축과 낮은 금리, 조세수입 증가로 GDP 대비 財政赤字 비율은 減少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金利引上을 통해 성장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음.
- 1994~97년의 成長率은 각각 3.6%, 2.8%, 2.7%, 2.3%로 예상됨.

1) 美國의 潛在成長率과 自然失業率은 각각 2.5%와 6~6.5%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日本

- 設備投資가 다소 부진하지만 政府投資와 住宅建設投資의 增加가 이를 상쇄하고 있으며 消費支出도 다소 증가하고 있고 在庫調整도 마무리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음(일본 중앙은행).
- 1995~97년의 成長率은 2.3%, 3.1%, 4.4%로 예상됨.

3) 西유럽

- 1992~93년의 환율약세에 따른 輸出의 好調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내 국가간의 무역규모 증대로 輸出의 增加趨勢는 199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²⁾.
- 빠른 경기회복의 요인으로 EU의 장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높은 失業率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유럽의 재정정책은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낮은 금리와 수출증대, 리스트럭처링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음.
-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기업은

2)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음.

내부자금조달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

- 높은 失業率과 稅負擔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다소 활성화되고 있음³⁾.
- 민간 고정투자(공장과 설비)도 低點을 지나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의 요인에 따라 1994년과 1995~96년, 그리고 1997년 이후 西유럽의 成長率은 각각 2.3%, 3%, 2.7%로 예상됨.

4) 東유럽

- 러시아는 최근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있으나 실질 GDP는 89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그러나 환율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물가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음.
- 소득 및 개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부문이 빨리 성장하고 있어 실제상황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보다는 다소 좋은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를 제외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은 매우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이며 금년 7월까지의 실질

3)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는 제외.

GDP는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하였음.

-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高인플레이(hyperinflation)를 경험하고 있고 산업생산도 감소일로에 있음.

- 동유럽 중 체코와 폴란드의 경제가 가장 실적이 좋음.

- 체코는 인플레이율과 失業率이 낮고 경상수지 흑자에 재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폴란드의 성장은 체코보다 높지만(1994~97년 평균 22% 예상) 물가불안 요인과 재정적자의 문제를 안고 있음.

- 東유럽의 경기부진이 世界經濟에 크게 惡影響을 미치지 않는 전망임.

5) 아시아와 南美

- 中國은 금년도 上半期 成長率이 11.6%에 달했으며 95년에는 9~10%에 이를 전망이다.

- 금년도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19%에 육박하고 95년에는 11%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지만 經常收支는 赤字를 보이고 있음.
-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인구비중이 낮아(해당 연령인구의 2%; 우리나라는 40%)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빠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인도는 消費支出과 國內 投資의 增加에 힘입어 지난 8월까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각각 9.5%와 14% 성장하였음. 세기말까지 연간 6~7%씩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 發電 및 通信(중국, 인도)과 交通部門(한국, 대만, 홍콩) 등 SOC投資를 위한 역내외 자본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인도, 필리핀, 베트남도 이에 가세할 전망이다.
- 라틴 아메리카는 어느 지역보다 投資收益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 換率 및 國際金融市場

- 금년 말까지 換率은 달러당 102엔과 1.54DM로 예상되며 95년 말에는 각각 110엔과 1.65DM로 예상됨.
- 전세계적인 景氣恢復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SOC投資를 위한 資金需要의 增大는 世界金融市場에 대한 壓迫要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國內 經濟動向 및 1995年 展望

가. 1994年 經濟動向 개요

- 新엔고 추세의 계속, 對개도국 수출이 꾸준히 증가, 그리고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하여 1994년중 우리나라 경제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금년도 실질경제 성장률은 약 8.1%가 될 것으로 추정됨(表 I-1 참조).
- 경기회복과 아울러 민간소비도 호조를 보여, 설비투자의 증가와 함께 대폭적인 수입증가의 요인이 되었으며,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앞지름에 따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큰폭의 적자를 나타냈고 보통 4/4분기에는 국제수지가 호전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경우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음(금년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약 44억달러로 예상됨).
- 3/4분기까지의 장·단기 자본수지는 약 5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연말까지 80억달러를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중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가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 및 물가 압력을 상당폭 완화시켜 주었으나 4/4분기 들어 자본유입의 확대로 인하여 대미환율은 현재 달러당 790원 수준임.
- 총통화 평잔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금년중 계속 하락(1/4분기 16.95%, 2/4분기 15.45%, 3/4분기 15.35%)하였으며 이와같은 점진적인 통화긴축과 관련하여 회사채 수익률은 2/4분기까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1/4분기 12.16%, 2/4분기 12.39%) 3/4분기부터는 13%대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14%대에 근접하고 있음.

-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아 한때 6%에 근접하기도 했으나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11월말 현재 전년말대비 5.5%로 진정되었고 생산자물가의 경우 금년 중반기까지는 매우 안정되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활동 참가율이 62%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분기 현재 2.2%를 기록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임금상승 압력이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년 중반 이후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화의 약세추세가 반전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서유럽국가들도 더이상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o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엔고와 낮은 금리, 낮은 원자재 가격 등의 유리한 가격조건은 더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당분간 호황을 보일 전망이다므로 전체적인 경제환경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여짐.

나. 1995年 經濟展望

- 내년도에는 자본시장개방의 확대 등으로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예상되는 반면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금년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본 자료에서는 내년도 장단기 자본수지 흑자폭이 약 140억달러에 달하여 금년보다 추가적인 자본 유입규모가 약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몇가지 통화 환율 및 재정정책의 policy mix 에 대한 시나리오에 의하여 1995년 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함.

- <表 I -1>의 두번째 행(1995A)에서는 추가적인 자본유입을 100% 통화로 흡수하여 환율을 안정시킬 경우의 거시지표 전망이 제시되어 있고 세번째 행(1995B)에서는 50%만 통화로 흡수하고 나머지 50%는 환율이 절상으로 흡수하였을 경우가 제시되어 있으며 네번째 행(1995C)에서는 재정에서 추가적으로 1조원을 긴축하여 흡수하며 그 나머지를 통화와 환율로 각각 반씩 흡수하였을 경우의 전망이 제시되어 있음.

-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 흔히 來年度の 經濟成長은 금년보다는 다소 둔화되어 7.1%-7.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物價上昇率은 금년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⁴⁾

- 設備投資의 경우 금년도에 이미 큰 증가를 보임으로 해서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점 외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금리와 원자재가격 그리고 환율절상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다소 둔화될

4) 1995C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7.13% 정도로 둔화되어도 실업률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즉, 잠재GNP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표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재정·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전망이므로 내년중에는 금년에 비하여 설비투자 증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반면 해외자본유입으로 인한 국내 총수요 증가는 내수부문 특히 建設投資의 증가와 꾸준한 民間消費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수입은 설비투자 증가에 매우 민감함에 비추어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와 성장률의 둔화는 건설투자 증가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입증가율의 둔화를 가져옴으로써 내년도 貿易 및 經常收支는 금년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한 환율절상은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실업률이 계속 하락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고 최근의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압박은 주게 됨으로써 환율절상으로 인한 물가하락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물가의 상승은 명목금리의 상승압박을 초래하며, 내년중에도 통화당국의 불태화정책에 의하여 금년보다 총통화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회사채수익률 등 금융자산의 금리가 다소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도에도 物價安定에 政策運用의 최우선과제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 財政을 가능한 한 더욱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 資本流出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통화에 대한 압박을 줄여 나

가야 할 것임.

<表 I-1> 主要 經濟變數 展望¹⁾

	1994	1995A	1995B	1995C
GNP	8.1	7.6	7.2	7.1
민간소비	6.6	6.6	6.5	6.5
총고정자본형성	9.3	8.2	8.0	7.9
설비투자	16.9	6.6	6.4	6.1
건설투자	6.3	9.3	9.3	9.2
수출 ²⁾	12.4	6.1	6.0	5.9
수입 ²⁾	13.6	6.0	6.7	6.3
무역수지 ³⁾	-25.6	-2.0	-5.0	-3.5
경상수지 ³⁾	-44.0	-26.1	-31.4	-29.9
소비자물가 ⁴⁾	5.1	5.4	5.3	5.2
생산자물가 ⁴⁾	1.7	2.4	2.4	2.3
회사채 수익률	13.5	14.5	14.6	14.5
실업률	2.3	2.2	2.2	2.2
총통화평잔증가율	15.9	16.1	15.6	15.5

註: 1) 불변가격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2) 국민계정상의 재화와 용역의 수출/수입의 증가율.

3) 역불.

4) 전년말 대비가 아니고 연평균 증가율임.

1995A :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유입을 100% 통화로 흡수

1995B :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유입을 50%는 통화, 나머지 50%는 환율로 흡수

1995C :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유입을 1조원의 재정수지흑자, 나머지의 반씩을 통화와 환율로 흡수

II. 稅收 및 財政動向

1. 稅收動向

가. 1994年 稅收動向

종합적인 추세

- 1994년의 國稅豫算은 1993년 실적 대비보다 16.8% 증가한 것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1~10월의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24.4%의 증가를 보여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음(<表 II-1> 참조).
 - 1993년 10월 말까지의 세수 진도비는 실적 대비 84.2%였는 데 반해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비는 89.6%로 상당히 높음.
 - 直接稅가 間接稅에 비해 稅收入의 增加가 뚜렷함.

세목별 세수동향

- 稅收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稅目:
 - 1993년 이래 경기가 크게 호전됨에 따라 法人稅와 所得稅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輸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關稅收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輸入分 附加價值稅 收入의 증가에 힘입어 附加價值稅 收入도 증가하였음. 그러나 설비투자와 수출의 증대로 인해 國內分 附加價值稅 收入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1990년대 초에 있었던 과표현실화의 영향을 받아 相續稅 收入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증시의 활황에 힘입어 證券去來稅 收入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이미 예산치를 상회하고 있음.
- 特別消費稅는 교통세의 신설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가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수입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들 품목을 제외하고는 特別消費稅 收入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음.

- 稅收入이 저조한 稅目:

- 土超稅는 지난해에 유희토지에 대한 정기과세로 세수입이 상당수준에 이르렀으나 올해에는 지가의 안정에 따라 예정과세를 양게 되어 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 電話稅, 印紙稅, 防衛稅 등의 세수입 증가율이 여타 세목에 비해 저조한 편임.
- 이들 세목이 여타 세목에 비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고 전화요금도 인하되었기 때문임.
-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과 정유사간의 가격인하 경쟁에 따라 交通稅 수입 실적이 부진한 편임.

나. 1994年 4/4分期 및 1995年 稅收展望

1994년 11~12월

- 경기의 활황에 따라 1994년 11~12월의 세수여건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1994년의 稅收實績은 예산을 초과할 전망이다.
- 특히 이미 세수가 예산을 초과한 證券去來稅의 경우에는 증시가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수 증가율이 계속 높을 것이며,
-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에 힘입어 特別消費稅의 세수 증가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경기호전에 따라 설비투자의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환급규모가 증가할 것이고, 유가하락 및 지난 6월 15일의 휘발유 交通稅 탄력세율 인하(190%→170%)에 따라 交通稅의 세수입이 예산에 미달할 전망이며, 土超稅의 지속적인 부진에 따라 11~12월의 세수입 증가율은 1~10월보다 다소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1995년 전망

- 1995년에도 경기의 활성화가 지속되어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전망이 매우 밝음.
- 특히 法人稅나 所得稅 申告分의 경우에는 1994년의 경기 호조에 따른 1994년 귀속분 법인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 證券去來稅도 경기활황과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등으로 내년에도 증시가 활황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증가가 예

상됨.

- 이들 세목의 1995년도 세수입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자동차 신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지출의 증가에 따라 특별 소비세와 교통세의 세수전망도 밝음.

- 다만 附加價值稅의 경우에는

-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바 수입분 부가가치세 수입의 증가요인이 있지만,
- 설비투자과 수출의 증가추세도 크므로 부가가치세의 환급규모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부가가치세는 세수여건이 매우 호조를 보이는 세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작을 것임.

〈표 II-1〉 國稅收入 統計¹

(단위: 억원, %)

	1993						1994						예 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10월	1~10월 (進度比)	1993 計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10월	1~10월(進度比)[增減率] ²		
國稅	89,650	94,203	94,876	51,696	330,425 (84.2)	392,606	110,915	117,289	124,512	57,846	410,921 (89.6) [24.4]	458,455	
內國稅	78,866	81,708	82,687	46,807	290,068 (84.9)	341,745	94,615	95,365	99,975	49,568	339,771 (90.8) [17.1]	374,113	
直接稅	36,752	39,605	42,625	12,645	131,627 (80.2)	164,135	47,146	49,150	53,577	14,515	164,388 (88.5) [24.9]	185,790	
所得稅	16,334	28,810	21,346	7,729	74,282 (78.5)	94,629	20,061	34,506	26,020	8,906	89,494 (84.0) [20.5]	106,552	
申告分	3,148	15,171	6,471	1,228	26,018 (77.2)	36,051	4,028	17,371	7,388	1,277	30,064 (79.2) [15.6]	37,946	
源泉分	13,186	13,639	14,875	6,564	48,264 (82.4)	58,578	16,034	17,134	17,633	7,629	59,430 (86.6) [23.1]	68,606	
法人稅	18,475	8,694	19,636	3,919	50,724 (86.5)	58,623	24,400	11,942	25,381	4,661	66,384 (98.3) [30.9]	67,539	
土超稅	5	370	361	480	1,216 (34.9)	3,226	39	280	8	168	496 (24.9) [-59.2]	1,995	
相續稅	1,349	1,378	1,244	539	4,510 (67.6)	6,672	1,890	2,357	2,130	779	7,156 (85.1) [58.7]	8,407	
相續分	598	749	596	304	2,247 (64.9)	3,464	978	1,402	1,232	519	4,131 (82.8) [83.8]	4,987	
贈與分	751	629	648	235	2,263 (70.5)	3,208	912	955	898	260	3,025 (88.4) [33.7]	3,420	
再評價稅	589	353	38	5	985 (100.0)	985	756	66	36	0	858 (66.1) [-12.9]	1,297	
間接稅	40,194	40,773	39,192	34,224	154,383 (88.9)	173,686	45,147	44,463	45,468	34,753	170,039 (93.5) [10.1]	181,925	
附加價値稅	26,974	27,101	27,413	29,455	110,943 (94.9)	116,875	31,629	32,090	32,164	30,044	126,131 (93.6) [13.7]	134,787	
特別消費稅	8,313	8,767	6,327	2,944	26,351 (73.1)	36,069	7,519	5,989	5,827	2,027	21,364 (90.8) [-18.9]	23,526	
酒稅	3,255	3,126	3,671	1,386	11,438 (83.6)	13,676	3,601	3,622	4,711	1,705	13,639 (87.9) [19.2]	15,522	
電話稅	969	1,018	1,003	315	3,305 (82.7)	3,997	1,104	1,151	1,178	383	3,816 (83.0) [15.5]	4,598	
證券去來稅	683	761	778	124	2,346 (76.4)	3,069	1,293	1,612	1,589	594	5,088 (145.7) [116.9]	3,492	
印紙稅	517	597	638	246	1,998 (72.5)	2,426	603	700	719	226	2,248 (86.6) [12.5]	2,597	
過年度收入	1,403	733	232	-308	2,060 (78.2)	1,498	1,718	1,052	219	74	3,096 (81.5) [50.3]	3,801	
交通稅	-	-	-	-	- (-)	-	3,836	6,582	9,136	2,321	21,876 (72.0) [-]	30,394	
關稅	6,331	7,256	7,406	2,643	23,636 (69.4)	28,859	7,248	8,766	9,126	2,997	28,104 (99.6) [18.9]	28,212	
防衛稅	286	202	314	112	914 (90.9)	1,213	217	246	116	48	627 (117.2) [-31.4]	535	
教育稅	4,167	5,037	4,469	2,134	15,807 (70.9)	20,789	4,999	6,330	6,159	2,912	20,542 (81.5) [30.0]	25,201	

註: 1) 1994년 3/4분기와 10월분 統計는 暫定値임.

2) 1993년 대비.

2. 財政動向

가. 1994年度 上半期 財政支出

- 1994년 상반기의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의 지출을 포함)실적은 1994년도 총지출예산(61조 5,286억원)의 4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表 II-2> 참조)⁵⁾.
- 이러한 상반기 재정지출 집행진도비는 90년 이래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회계별 지출내역

- 일반회계는 예산의 44.1%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91~93년도의 동 기간 집행실적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表 II-3> 참조).
- 특별회계도 예산의 35.8%가 지출되어 타년도 동 기간 집행실적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임.
- 기금의 경우도 예산의 40.3%가 집행되어 타년도 동 기간 평균 집행실적에 비하여 빠른 집행진도를 보임.
- 세입세출외 지출은 예산의 27.5%가 진행되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음.

5) 여기서의 재정지출은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의 합계임.

〈表 II-2〉 1994年度 上半期 總財政支出의 會計別 支出內譯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계
'94 예산 (A)	348,620	192,618	70,984	3,064	615,286
'94 상반기 (B)	153,892	68,904	28,617	842	252,255
비중 (B/A)	(44.1)	(35.8)	(40.3)	(27.5)	(41.0)

〈表 II-3〉 上半期 總財政支出의 會計別 支出內譯의 年間比較

(단위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계
'91년	37.2	27.5	34.2	27.9	34.6
'92년	41.9	34.8	45.7	27.6	40.6
'93년	41.5	34.0	32.5	32.4	38.5

기능별 지출내역

- 자본지출은 50.4%가 집행된 반면
- 경상지출과 순용자지출은 각각 40.4%와 33.6%가 집행되어
- SOC투자 및 각종 경제사회개발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빨리 집행

행된 것으로 보임(<表 II-4> 참조).

<表 II-4> 1994年度 上半期 總財政支出의 機能別 支出內譯

(단위 : 억원, %)

구 분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 용 자		계	
	금 액	진 도 비	금 액	진 도 비	금 액	진 도 비	금 액	진 도 비
1994 예산	457,759	-	14,796	-	65,138	-	615,286	-
1994 상반기	184,852	40.4	46,518	50.4	21,885	33.6	252,255	41.0

나. 통합재정수지

-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빠른 재정지출 집행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세입은 상당한 호조를 보여 통합재정수지는 상반기중 5조 3,178억원의 흑자를 실현하였음(<表 II-5> 참조)⁶⁾.

○ 일반회계는 1994년도 예산상 흑자의 76.2%를 실현하였는데 이는 타년도의 동 기간 흑자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큰 규모임 (<表 II-6> 참조).

○ 특별회계는 1994년도 예산상 적자의 18.3%가 실현되었는데 타년도 동 기간 비교시 가장 큰 규모의 적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룩되고 있음.

6) 통합재정수지는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의 합계인 세입에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및 순용자의 합계인 세출을 차감한 것임.

- 기금의 경우 1994년도 예산상으로는 953억원의 적자가 계상되어 있으나 상반기중 8,544억원의 흑자가 실현되어 1990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흑자규모를 보임.
- 세입세출의 수지는 예산상 적자의 27.5%가 실현되었음.

〈表 II-5〉 1994年度 上半期 會計別 統合財政收支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계
'94 예산(A)	82,879	△96,555	△953	△3,064	△17,693
'94 상반기(B) 비중(B/A)	63,161 (76.2)	△17,685 (18.3)	8,544 (△896.5)	△842 (27.5)	53,178 (△300.5)
차(A-B)	19,718	△78,870	△9,497	△2,222	△70,871

〈表 II-6〉 上半期 會計別 統合財政收支의 年度別 比較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	계
91 결산(A) 상반기(B) 비중(A/B) 차(A-B)	32,156 49,289 153.3 △17,131	△37,664 △3,126 8.3 △34,538	△29,737 △7,714 25.9 △22,023	△4,974 △1,389 27.9 △3,585	△40,219 37,058 △92.1 △77,277
92 결산(A) 상반기(B) 비중(A/B) 차(A-B)	47,878 48,306 100.9 △428	△39,157 △6,169 15.8 △32,988	△20,638 △11,113 53.8 △9,525	△5,110 △1,411 27.6 △3,699	△17,027 29,613 △173.9 △46,640
93 결산(A) 상반기(B) 비중(A/B) 차(A-B)	56,369 45,498 80.7 10,871	△44,276 △5,190 11.7 △39,086	△2,081 7,207 △346.3 △9,288	△1,883 △611 32.4 △1,272	8,129 46,904 577.0 △38,775

3. 綜合的 評價

- 이상에서 논의한 세수 및 재정동향을 종합해 볼 때 세입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중 큰 규모의 흑자가 실현되어 재정을 통한 긴축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경기여건으로 보아서 남은 회계연도 동안이라도 계획된 예산의 집행에 무리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리인상 및 물가안정 등에 대응하는 정책보완이 필요함.
 - 특히 기금의 경우 다른 회계에 비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경기동향을 반영한 수지정책을 운용할 것이 요망됨.

- 금년도 세수가 예산치를 초과할 전망이고 내년도에도 세수전망이 밝음에 따라 세무당국의 징세노력이 다소 소홀해질 수도 있음.
 - 현재의 경기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재정에서 가능한 한 긴축적인 효과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결코 징세노력을 완화해서는 안 될 것임.

Ⅲ. OECD 회원국의 최근 稅制改革 動向⁷⁾

1. 稅制改革의 추진방향

- OECD 회원국에서는 附加價值稅制의 도입을 제외하곤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에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거의 없었음. 그러나 1984~1986년에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 個人 및 法人 所得稅制를 대폭 개편한 이후 1993년까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所得稅制를 개편하였거나 개편을 계획중임(<附表 1>, <附表 2> 참조).
-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個人 및 法人 所得稅의 과세표준 확대 및 세율인하, 조세지원제도의 축소 또는 전면 폐지 등임.
 - 1993년에는 미국이 최고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다소 완화시켰으나 덴마크, 호주, 프랑스, 독일은 個人 및 法人所得稅率을 인하하였음.
 - 법인세 과표는 확대된 것이 분명하지만 個人所得稅의 경우는 과표 확대와 과표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졌음.
 - 비록 모든 OECD 회원국이 예외 없이 주택소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과 같은 비중립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세제개혁은 모두 중립적인 조세제도의 구축을 위해 조세지원을 축소함.
 - 사회보장세의 변화는 비교적 적었으나 몇몇 국가에서는 최고 한도

7) 이 부분은 최근 OECD에서 발간된 "Background Documentation on Recent Tax Reforms in OECD Member Countries," (March 1994)에 기초를 두고 있음.

의 폐지, 누진세제의 도입, 개인소득세와의 통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역진성을 완화시켰음.

- 租稅介入主義에서 중립적인 租稅制度로의 이행은 시장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 정부의 개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임.
- 미국, 영국과 같은 큰 국가들이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인하하자 국가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름.

2. 租稅負擔率 및 租稅構造

가. 租稅負擔率

- 많은 국가에서 조세수입에 대해 중립적이어서 한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세제개혁이 수행되었음.
 -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의 확대에 의한 세수의 증대를 세율 인하를 통해서 상쇄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세목의 세수 감소를 다른 세목의 세수증대로 보충해야 했음(예,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소득세수 감소 보충).
 -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터키 등에서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서 전반적인 세수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독일의 세제개혁은 세수 감소를 초래하였음.
- 總租稅收入의 對GDP 비중('租稅負擔率')은 1970년대 말에 잠깐 하락

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비록 그 규모와 시기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최근의 추세를 보면

○1980년 이후 90년대 초까지 호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에서는 租稅負擔率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다른 회원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1991년과 1992년만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OECD 전체 평균 租稅負擔率은 1980년의 35%에서 1991년에 39%로 증가하였음(<表 III-1> 참조).

-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혜택의 축소 또는 증가세 둔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므로 이들 국가의 租稅負擔率 증가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북유럽과 日本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재정적자와 정부지출 축소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해 租稅負擔率 증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나. 租稅構造

- 대부분의 국가에서 所得稅, 社會保障稅, 消費稅가 總租稅收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우리나라의 경우는 1993년 기준 78%).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중심 세목을 所得稅에서 消費稅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하였

<表 III-1> 總租稅收入의 對 GDP 比重

	1980	1985	1991	1992 ¹⁾
호주	28	30	29	n. a.
오스트리아	41	43	42	44
벨기에	44	48	45	n. a.
캐나다	32	33	37	n. a.
덴마크	45	49	48	49
핀란드	33	37	38	38
프랑스	42	44	44	44
독일	38	38	39	40
그리스	29	35	38	n. a.
아이슬란드	30	29	32	33
아일랜드	34	38	37	38
이탈리아	30	35	40	42
일본	25	28	31	30
룩셈부르크	46	50	48	n. a.
네덜란드	45	44	47	47
뉴질랜드	33	34	36	n. a.
노르웨이	47	48	47	47
포르투갈	29	32	36	38
스페인	24	29	35	36
스웨덴	49	50	53	50
스위스	31	32	31	32
터키	22	20	29	32
영국	35	38	36	36
미국	29	29	30	n. a.
OECD(전체)	35	37	39	
OECD(유럽)	37	39	40	
EEC	37	40	41	
한국 ²⁾	18	17	19	19

註: 1) 추정치

2) 對 GNP 비중

資料: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2*, Paris, 199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지만 실제로 1980년과 1992년 사이에 조세구조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附表 3> 참조).

○ 반면 최근에 附加價值稅制를 도입한 뉴질랜드와 터키에서는 所得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고,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消費稅가 一般消費稅 중심으로 이동하였음.

- OECD 회원국 전체 평균(단순평균)을 보면 1980년에서 1992년 사이에 消費稅에서 一般消費稅(예: 附加價值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조세구조의 변화가 없었음.

- OECD 국가 중 많은 소규모 국가들과 일부 대규모 국가들에서 個人所得稅에 비해 社會保障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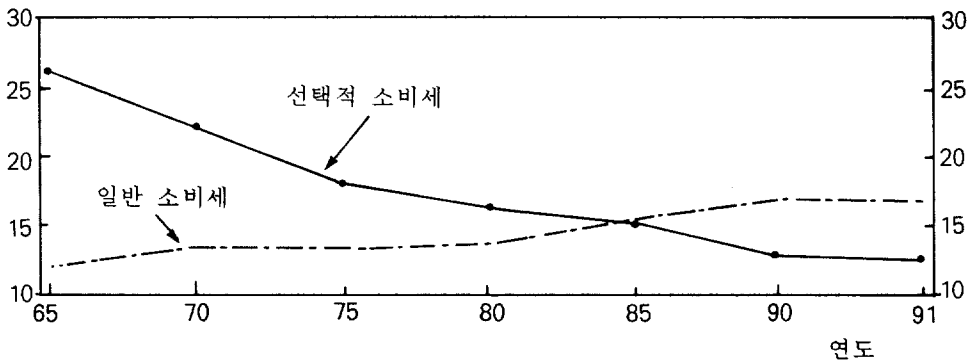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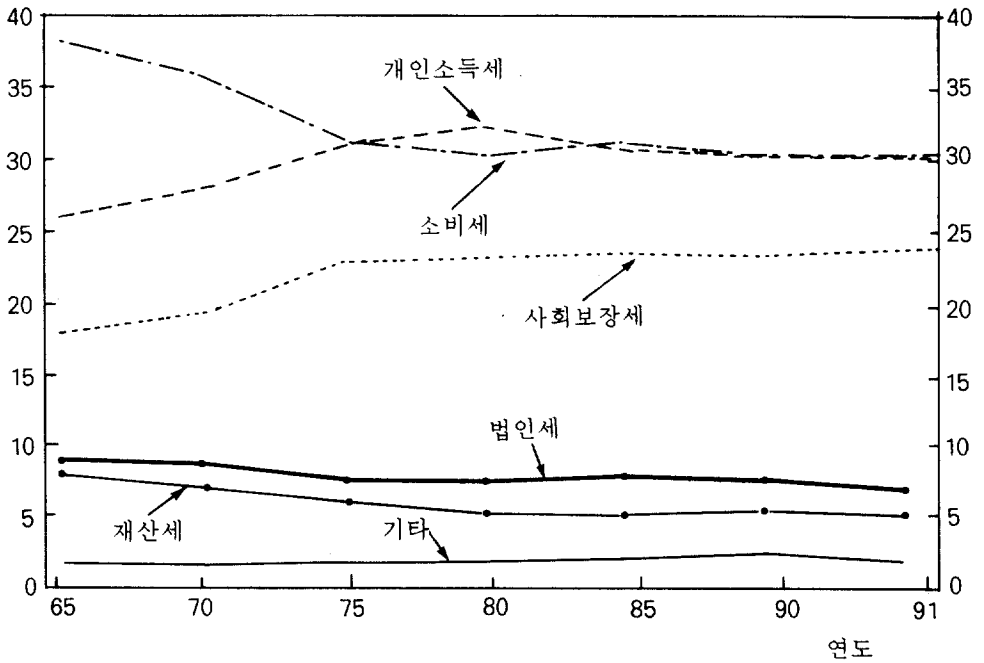
- 法人稅에 비해 個人所得稅의 비중이 증가한 국가와 감소한 국가는 각각 절반 정도임.

- 1965년부터 1992년까지 OECD 국가들의 租稅構造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보면(<그림 III-1> 참조)

○ 1965년에는 個人所得稅와 함께 주로 物品稅와 輸入關稅인 選別的消費稅가 가장 중요한 조세 수입원이었음.

○ 1992년에는 選別的인 消費稅가 個人所得稅의 절반 정도였으며 社會保障稅보다도 훨씬 적고, 一般消費稅(보통 附加價值稅)보다는 다소 적었음.

<그림 III-1> 租稅收入의 構成
(OECD 단순평균)



3. 個人所得稅

가. 累進率 緩和와 課標擴大

- 중앙정부의 최고세율은 국가마다 크게 달라 일부 국가에서는 55%를 넘는 반면 30%도 안 되는 국가도 있음(<附表 4> 참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고세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스위스와 터키에서는 1985년에서 1993년 사이에 최고세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음.

- 최저세율은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에서만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면 캐나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저세율이 인상되었음.
 - 이는 과세구간의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면세한도를 상당 수준 인상하였음.

- 따라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所得稅의 누진율이 현저하게 감소됨.
 - OECD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稅制改革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유효세율은 인하되었고 저소득층의 유효세율은 인상되었음.
 - 이러한 所得稅率의 변화는 모두 수직적인 공평성보다는 수평적 공평성에 더욱 조세정책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986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세율계급 수가 감소되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附表 5> 참조).
 -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에서는 아직 소득세 세율계급이 10개를 넘으며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에는 두 개의 세율계급이 있음.
 - 세율계급의 축소는 간편성의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의 납세비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임.

- 所得稅 과세표준의 확대는 특정 지출(일반적으로 주택 소유 또는 사업비용)에 대한 조세 지원을 폐지·감축시키거나 종래 과세에서 제외되었던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거나 과세소득의 개념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附表 6> 참조).
 - 비록 몇몇 국가에서는 사업 및 여행비용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면세한도를 인상하고 개인연금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축소하였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과세표준을 확대하였음.

-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에서는 최근 社會保障稅의 所得控除를 폐지하였음.
 - 이는 社會保障稅가 조세로 간주되는 한, 社會保障稅와 所得稅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社會保障稅의 所得控除를 허용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하고 고용주의 부담도 사업이익에서 공제하기 때문임.

나. 기타 個人所得稅의 변화

-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의 4개 국가에서는 物價聯動制를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 부부별산제로의 이행이 지난 20년간 변화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 벨기에와 영국에서는 이 추세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며
 - 스페인에서는 1989년에 가족단위의 과세에서 납세자 선택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음.
 -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독일과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joint income-splitting system(2분2승방식)을 최근에 도입하였음.

4. 法人所得稅

가. 累進率 축소와 課稅擴大

- 1980년대 중반까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租稅支援制度가 이용되었음.
 - 조세지원제도는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으며 특정 자산, 활동, 또는 지역에만 혜택이 국한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자본 특히, 기계 또는 설비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 유효세율은 자산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달랐음.
-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이며 투자를 왜곡시킨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음.
- 대폭적인 개혁을 처음으로 단행한 국가는 영국으로 1984년에 대부분의 투자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그 후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랐음. 그러나 아직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 法人稅 지원제도가 존속되고 있음 (<附表 9>~<附表 11> 참조).
- 법인의 이익 규모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수는 대략 반반씩 됨.
 - 유일하게 네덜란드에서는(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적은 수익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
-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 표준 法人稅率을 표준 또는 최고 個人所得稅率에 맞추었는데 이는 법인의 설립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임.

나. 利潤에 대한 租稅制度

- 配當利益과 留保利益에 대한 租稅制度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기업은 확실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지속되어 왔음(<附表 12> 참조).
 - OECD 회원국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관련제도를 바꾸었거나 바꿀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1975년에 작성된 부분적인 imputation 체제에 대한 조화지침을 철회하고 상황을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음.
 - 美國의 경우 1992년 1월 재무성에서 “所得稅와 法人稅의 통합”에 대한 discussion paper를 낸 바 있음.

5. 社會保障稅

- 조세철학 및 시행제도의 회원국간 격차는 社會保障稅 부문에서 가장 큼.
 - 호주,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社會保障稅가 전혀 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
 - 다른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고용주 부담))에서는 오랫동안 사회보장세가 세수의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였음.

- 社會保障稅는 관리하기 쉽고 바꾸기 쉬운 반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특히 비임금 노동비용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인하하였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최근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의 무기한 고용인에 대한 社會保障稅 부담을 일부 면제하였음. 이탈리아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용주의 부담을 축소하였음.
- 이상에서 지적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社會保障稅 부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계속 社會保障稅의 징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다른 조세에 비해 납세자들의 저항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社會保障稅는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많은 국가에서 현재 어떻게 社會保障稅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음.

6. 附加價值稅制

- 1960년대 중반까지는 OECD 회원국 중에 附加價值稅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었음. 그러나 1987년 말까지 24개 회원국 중 20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제도가 운용되고 있었으며 1995년 1월에는 호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제가 운용될 예정임(<附表 13> 참조).

7. 向後 展望

- 이상과 같이 많은 국가에서의 대폭적인 稅制改革이 1990년대 후반에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아직 개혁이 진행중인 일부 국가에서는 주요 과제 중에서 미결된 것을 완성하고 나서, 財産稅, 環境汚染稅 등과 같은 다른 조세분야로 관심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에 대한 조세제도에 대해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 조세제도의 정비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조세제도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政府部門 內의 課稅權에 대한 것임.
 - 그러나 북유럽국가들과 호주, 프랑스, 일본을 제외한 모든 연방국가들에서는 하위정부의 수입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그 반대의 극단적인 경우로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총세수의 80% 이상이 중앙 또는 연방 정부에 귀속됨.
 - 많은 국가에서 하위정부의 수입원 및 지출 기능의 제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음.
- OECD 회원국들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稅制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消費稅, 특히 附加價值稅의 비중 증가
 - 個人 및 法人 所得稅의 지속적인 課稅擴張과 稅率引下

- 저축 및 부채에 대한 조세제도상의 왜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 個人所得稅와 社會保障稅의 다양한 수준의 통합
 - 이익에 대한 個人所得稅와 法人稅 관계 변화
 - 環境稅 이용의 증가
- EC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간 個人所得稅와 法人所得稅, 그리고 附加價値稅의 세율격차가 줄어들 것임.
- 재산 및 자본에 부과하는 조세는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지만 부유한 자들이 집중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비교적 적었으며 정부의 정치적 변화가 있는 후에야 발생하였음(예, 최근의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 건물 및 토지의 소유 및 점유에 대한 조세는 국가간에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총조세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하나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1%에도 훨씬 못미침. 이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몇몇 국가에서는 거래세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세율이 인하되기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대응으로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함.
- 오염자가 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전통적인 酒稅, 담배稅, 휘발유 및 自動車稅를 제

외하고는 OECD 회원국의 거의 대부분이 순수한 環境稅를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음.

○附加價值稅와 같이 포괄적인 消費稅制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면 세무행정이 매우 복잡해짐.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 무연휘발유와 유연휘발유에 대해서 그리고 무게 및 용량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다른 부분에서는 탄소세, 토지 및 수질 오염세가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1993년 벨기에에서는 “eco-tax”라고 불리우는 병에 담겨 있는 물건, 건전지에 대한 環境稅를 도입하였음. 북유럽국가들에는 탄소와 유황의 방출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에너지세가 있음.

○OECD 전역을 통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북미 및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네덜란드에만 있는 환경세가, 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한 조세수입원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 문제에 대해서는 OECD의 재정위원회에서 검토중임.

- 스웨덴과 영국 등의 학자들과 연구기관 그리고 아일랜드, 미국의 세무당국이 연구하고 있는 個人所得稅를 대체하는 방안은 ‘直接的인 支出稅(direct expenditure tax)’로 아직 정부기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반대 이유 중의 하나는 각국 정부가 貯蓄에 대한 稅負擔이 과도하

다거나 貯蓄이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옹호론자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임. 貯蓄으로부터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消費에 대해 과세하는 것처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 법인의 현금흐름세와 遺産稅에 의해서 보충되는 직접적인 지출세는 재분배의 목적을 유지한 채 저축을 촉진시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변화에 따른 복잡성, 공제될 저축의 정의, 유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령 이민자의 통제, 이러한 제도가 없는 국가와의 조세협약 개편 등 실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附表 1> 1986年 以後 個人所得稅의 課稅 及 稅率 變化 또는 計劃¹⁾
(연방/중앙 정부)

국 가	과표확대	최고세율 인하 ²⁾	세율계급 축소	기 타
호주	1989	1987 1989 1990	1987 1989	
오스트리아	1989 1991	1989 1991	1989	
벨기에	1989	1988	1990	
캐나다	1988	1988	1988	
덴마크		1987 1993		보다 광범위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보조적인 소득세 도입(1987)
핀란드	1989 1990	1989 1990	1989	
프랑스		1991 1987 1988 1989 1990		
독일		1990		
그리스	1988	1988	1988	
아이슬란드	1988	1988	1988	
아일랜드	1989	1989 1990 1991		
이탈리아	1989 1991	1989	1989	
일본		1988 1989	1988 1989	
네덜란드	1989 1990	1990	1990	
뉴질랜드	1987 1988	1987 1988	1987	
노르웨이	1989 1987	1989 1987 1988 1989 1992	1989 1987 1988 1989	보다 광범위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보조적인 소득세 인상(1988~90)
포르투갈	1989	1989	1989	
스페인		1989	1989	면세점 인상(1987)
스웨덴		1987 1988 1989	1987	
터키	1990	1990		
영국	1991	1991	1991	
미국	1993 ³⁾	1988	1988	최고세율 인상(1993)
	1987	1988	1988	면세점 인상(1987)
		1987	1987	영세율을 기초공제로 전환(1987) 최고세율 인상(1993)

註: 1) 기타 변화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附表 6>과 <附表 8> 참조.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없었으며 계획안도 발표된 바 없음.

2) 많은 국가에서 최저세율이 인상되었음.

3) 몇가지 공제가 증가하였음.

<附表 2> 1986年 以後 法人所得稅의 課稅標準 및 稅率體系의 變化 또는 計劃¹⁾
(연방/중앙정부)

국 가	과세표준 확대	세율 인하	기 타
호주	1988 1991	1988 1993	여러 가지 지원제도 폐지(1988, 1991).
오스트리아	1989 1994	1989	여러 가지 지원제도 및 사업세 폐지(1989).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충(1994).
벨기에	1989	1989	
캐나다	1988	1988 1991	
덴마크	1990	1990 1991 1992	
핀란드	1989	1990 1991	조세지원의 한도 설정(1989~1990). Imputation System 도입(1990).
프랑스		1989 1990 1992 1993	1989년에는 신설법인에 대해 그리고 1990년에는 직원의 근로시간을 감축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 계열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5%의 세금 폐지. 장기 금융자본이득(저축 제외)에 대한 34%의 조세 부과 (1993).
독일	1991	1993	지역별 지원에 대한 한도 설정(1988).
그리스		1988	
아일랜드	1990	1988 1989	
이탈리아		1989	
일본		1988 1989 1990 1992	법인특별세 도입(1992. 4).
룩셈부르크		1987 1988 1989 1990	
네덜란드	1988	1988	
뉴질랜드		1988	
노르웨이	1992	1992	
포르투갈	1989	1989	여러 가지 지원제도 폐지(1989). 투자세액공제 한도 설정(1989).
스페인			
스웨덴	1989 1991	1989 1991	
터키	1993	1993	
영국	1986 1987	1986 1990 1991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1987, 1988).
미국	1987 1993	1987	여러 가지 지원제도 폐지. 지점세 신설(1987). 최고세율 인상(1993).

註: 1)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제안되지 않았음.

<附表 3> 1980年과 1992年の 租稅構造¹⁾
(총조세수입에 대한 비중(%))

	개인소득		법인소득		소득 및 이익		사회보장		상품 및 용역		일반소비					
	(A)		(B)		(C)		(D)		(E)		(F)		(A)/(C)		(F)/(E)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호주 ²⁾	44	41	12	15	56	56	-	-	31	28	5	8	78	74	17	29
오스트리아	23	22	4	4	27	27	31	33	32	30	20	20	87	80	64	65
벨기에 ²⁾	35	30	6	6	41	37	30	35	26	26	17	16	86	83	64	63
캐나다 ²⁾	34	41	12	6	47	47	11	15	33	27	12	14	73	87	35	52
덴마크	52	54	3	3	55	60	2	3	37	32	22	20	94	90	59	62
핀란드	45	49	4	3	49	52	10	9	39	37	21	23	91	94	54	62
프랑스	13	14	5	3	18	17	43	45	30	27	21	18	71	80	70	66
독일	30	28	5	4	35	32	34	39	27	27	17	16	84	87	61	61
그리스 ²⁾	15	13	4	5	19	20	33	30	41	45	13	26	77	63	32	57
아이슬란드	23	26	3	3	26	29	2	8	60	50	29	31	90	90	48	63
아일랜드	32	32	5	7	37	39	14	15	44	40	15	20	88	82	34	50
이탈리아	23	22	8	3	31	40	38	31	26	26	16	13	74	56	59	51
일본	24	27	22	20	46	47	29	30	16	13	-	4	53	57	-	33
룩셈부르크 ²⁾	27	22	17	16	43	38	29	29	21	25	11	15	62	59	51	58
네덜란드	26	25	7	7	33	31	38	39	25	26	16	15	80	79	63	60
뉴질랜드 ²⁾	62	45	8	7	70	57	-	-	22	35	10	24	88	80	46	67
노르웨이	28	25	13	7	41	32	21	27	35	37	18	18	68	78	51	49
포르투갈	n.a.	20	n.a.	8	20	29	30	26	45	43	16	21	n.a.	68	36	48
스페인	20	24	5	6	26	30	49	37	21	28	10	17	78	78	49	58
스웨덴	41	35	2	3	43	38	29	28	24	26	13	16	94	92	56	60
스위스	36	34	6	7	41	41	31	35	20	17	9	9	86	84	45	53
터키	44	38	4	5	52	32	14	20	26	29	-	22	84	86	-	76
영국	30	30	8	8	38	37	17	18	29	33	14	19	78	80	49	58
미국 ²⁾	37	35	10	7	47	42	26	30	17	17	7	8	78	83	40	45
OECD(전체)	32	30	7	7	39	38	23	24	30	30	14	17	80	79	45	56
OECD(유럽)	30	28	6	6	36	35	26	27	32	32	16	19	82	79	50	59
EEC	28	26	7	6	33	34	30	29	31	32	16	18	79	75	52	58

註: 1) 1992년은 추정치임.

2) 1992년 수치대신 1991년 수치를 사용하였음.

資料: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2*, Paris, 1993.

<附表 4> 個人所得稅의 最高 및 最低稅率(중앙정부)²⁾: 1986년과 1993년

국 가	최 고 세 율*			국 가	최 저 세 율**		
	1986	1993	차 이		1986	1993	차 이
	(A)	(B)	(C)		(D)	(E)	(F)
스웨덴	50	25	25	오스트리아	21	10	11
뉴질랜드	57	33	24	영국	29	20	9
영국	60	40	20	네덜란드	19	13	6
일본 ¹⁾	70	50	20	호주	24	20	4
벨기에	72	55	17	독일	22	19	3
미국 ^{1),3)}	50	36 ⁵⁾	14	이탈리아	12	10	2
그리스	63	50	13	룩셈부르크	12	10	2
노르웨이 ^{1),3)}	40	28	12	일본	10.5	10	0.5
오스트리아	62	50	12	스위스	1	1	0
이탈리아	62	50	12	프랑스	5	5	0
네덜란드 ⁴⁾	72	60	12	터키	25	25	0
핀란드 ¹⁾	51	39	12	벨기에	24	25	-1
호주	57	47	10	핀란드	6	7	-1
스페인	66	56	10	미국	11	15	-4
프랑스	65	57	8	뉴질랜드	17.5	24	-6.5
아일랜드	60	52	8	노르웨이	3	9.5	-6.5
아이슬란드	38.5	32.8	5.7	그리스	10	18	-8
덴마크 ^{1),3)}	45	40 ⁶⁾	5	캐나다	6	17	-11
캐나다 ^{1),3)}	34	31.8	2.2	스페인	8	20	-12
룩셈부르크	57	51.25	5.75	아이슬란드	18.5	33	-14.5
스위스 ^{1),3)}	12.3	13.2	-0.9	스웨덴	4	20	-16

註: * 국가를 C열의 순서대로 배열함.

** 국가를 F열의 순서대로 배열함.

- 1) 하위수준의 정부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 1992년의 대표적인 하위 정부세율: 벨기에 7%, 캐나다 17%, 덴마크 30%, 핀란드 17%, 아이슬란드 7%, 노르웨이 28%, 스웨덴은 30%(이상 단일세율 적용); 일본은 5%에서 15%, 스위스는 5%에서 31%, 미국은 0%에서 11%(이상 누진세율 적용).
- 2) 조세체계가 완전히 바뀐 포르투갈의 경우 비교가 불가능함.
- 3) 보다 광범위한 과세표준에 대해 독립적인 AMT 또는 보조적인 소득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임. 노르웨이의 경우 1989년에 후자의 세율이 6%에서 8.5%로 인상되었음.
- 4) 1986년의 수치는 개인소득세만을 고려한 것인 반면에 1992년 수치는 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징수되는 사회보장제도도 포함된 것임.
- 5)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에 의한 10%의 부가세를 고려할 경우 세율은 39.6%로 증가됨.
- 6) 5년에 걸친 단계적인 세율인하 프로그램이 1993년에 발표됨.

<附表 5> 1986年과 1993年度 個人所得稅 稅率階級 數(중앙정부)³⁾

국 가	1986년	1993년
호주	5 ¹⁾	4 ¹⁾
오스트리아	10	5
벨기에	12 ²⁾	7
캐나다	10	3
덴마크	3	3
핀란드	11	6 ¹⁾
프랑스	12 ¹⁾	12 ¹⁾
그리스	18 ¹⁾	9
아이슬란드	3	1
아일랜드	3	2
이탈리아	9	7
일본	15	5
룩셈부르크	21 ¹⁾	17 ¹⁾
네덜란드	9	3
뉴질랜드	6	2
노르웨이	8 ¹⁾	2 ¹⁾
포르투갈	11	4
스페인	34	17 single/16 couple ¹⁾
스웨덴	10 ¹⁾	1 ¹⁾
스위스	7 ¹⁾	12 single/15 couple ¹⁾
터키	6	6
영국	6	3
미국	14	3

註: 1) 영세율 제외, 스페인에서는 1988년에 영세율 단계 도입.

2) 영세율 포함.

3) 독일에서는 세율계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식에 의해서 세액이 결정되므로 제외하였음.

<附表 6> 1986年 以後 個人所得稅 支援制度의 變化

국 가	조세지원의 도입 또는 증가	조세지원의 폐지 또는 한도 설정	과세표준에 포함된 새로운 소득원
호주	종업원의 자사주식 인수에 대해 \$200까지 면세(1988)	최초의 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 경감 폐지(1989~1990)	퇴직연금(1988)
오스트리아	연간 공제의 증가(1993)	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특별 비용 공제한도 설정(1989)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도입(1989). 특정한 부가급부, 비과세 저축, 특정 장기채권에 대한 비과세 이자수입(1989)
벨기에		의식비용, 사업상 선물, 의복, 출퇴근 비용 등에 대한 개인 투자 공제(1989)	
캐나다		차량운영비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 소득 공제. 사업비용 공제한도 설정(1989)	
덴마크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공제(1987), 확실적인 인적공제제도 도입(1993)	보험공제, 고정 임금 소득자 공제(1987), 3% 일반비용 공제 폐지(1993)	몇 가지 사회보장연금(1993), 주식에 대한 대부분의 장기자본 이득(1993)
핀란드		근로소득 및 11가지 다른 소득공제, 적격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의 면세(1989)	
독일	피고용자의 직무관련 비용 공제, 휴일 근무 소득 비과세 등(1988),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를 새로운 기준에 의한 공제제도에 통합(1989)	가사노동에 대한 공제. 사업비용에 대한 한도 책정(1988)	생명보험에 대한 투자소득의 일정 부분에 자본 이득세 부과(1988)
그리스	근로소득자, 농민 및 특정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1988), 증여, 기부, 생명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 증가(1989)		

<附表 6>의 계속

국 가	조세지원의 도입 또는 증가	조세지원의 폐지 또는 한도 설정	과세표준에 포함된 새로운 소득원
아이슬란드		자본소득에 대한 것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제(1988)	
아일랜드	일반 면세한도 증가(1990, 1991)	주택저당용자에 대한 이자공제의 한도 설정(1987, 1989) 생명보험료의 공제한도 설정(1990, 1993)	
일본	배우자에 대한 특별 면세(1988)	저축성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면세(1988)	
네덜란드		사회보장세 및 다른 여러 가지 공제(1990)	
뉴질랜드		(자선을 제외한) 증여, 고용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1988)	퇴직연금(1988)
노르웨이	산정된 공제를 기초공제에 포함(1989)	몇 가지 조세감면 및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1992)	
스페인	개인 연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제도(1989) 주택 임대, 자녀 교육비, 자선기금에 대한 조세 지원	납세자의 주거지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 설정. 새로 발행된 신주 및 종업원의 자사 주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989), 해외 취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1991) "부업소득"의 세액공제(1990)	부가급부에 대한 과세 확대
스웨덴	기초공제. 주식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1984)	불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	부가급부의 확대 연금기금의 수익에 과세
터키	기초비용 공제(1993)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附表 6>의 계속

국 가	조세지원의 도입 또는 증가	조세지원의 폐지 또는 한도 설정	과세표준에 포함된 새로운 소득원
영국	60세 이상 인구의 민간 의료 보험료(1989), 자선기금에 대한 기부(1987), 이윤관련 비용(1986), Personal Equity Plans에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소득 및 양도차익(1986), 연금(1987, 1989), 자선기부금(1990), 특정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1990)	조세지원 폐지: 비자선적인 기부행위(1988), 주택개량자금(1988), 한도설정: 유지관리비(1988) 조세상의 특혜를 받는 연금기금에의 기여(1989), 주택저당융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의 공제한도 설정(1991) 및 한도 축소(1993)	자본이득에 대해 물가상승에 따라 연동적으로 소득세 부과(1988), 고용주가 제공한 자동차에 대한 과세를 상당히 증가시켜 보다 현실적이 되도록 함.
미국	인적공제, 표준공제 증가(1987),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1987, 1991)	주택저당융자에 대한 이자공제를 2주택 한도 내에서만 허용. 판매세 공제 폐지. 조세 혜택,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된 조세 혜택에 대해서 한도 설정. 수동적 투자 손실은 다른 소득으로 상쇄할 수 없음(1987). 소비자 신용의 이자 공제 폐지. 투자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 설정.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제 폐지	모든 실업수당, 자본 이득에도 완전히 과세됨.

<附表 7> 平均 生産職 勤勞者가 納付한 所得稅 및
 社會保障稅의 總所得에 對한 比率¹⁾

(단위: %)

	소득세		사회보장세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합계	
	1989년	1992년	1989년	1992년	1989년	1992년
호주	22	22	1	1	24	23
오스트리아	7	9	17	17	24	26
벨기에	23	23	12	13	35	36
캐나다	20	20	4	5	24	26
덴마크	44	45	3	2	47	47
핀란드	31	29	3	6	34	35
프랑스	7	8	18	18	25	26
독일	19	19	17	18	36	37
그리스	6	n.a.	13	n.a.	19	n.a.
아이슬란드	18	18	-	0.3	18	18
아일랜드	26	23	8	8	33	31
이탈리아	18	19	9	9	27	28
일본	8	8	7	7	15	15
룩셈부르크	14	12	12	12	26	24
네덜란드	12	12	24	30	36	42
뉴질랜드	23	24	-	-	23	24
노르웨이	26	21	8	8	34	29
포르투갈	7	6	11	11	18	17
스페인	10	12	6	6	16	18
스웨덴	37	28	-	-	37	28
스위스	11	11	10	10	21	22
터키 ²⁾	23	22	9	12	32	34
영국	19	18	8	8	27	26
미국	18	18	8	8	26	26

註: 1) 국가마다 크게 다른 비용 관련 조세지원은 고려하지 않았음. 하위수준의 정부가 부과한 조세도 포함하였음. 고용주가 부담한 사회보장세는 제외하였음.

2) 1991년.

資料: OECD, *The Tax/Benefit Position of Production Workers 1989-1992*, Paris, 1993.

<附表 8> 1986年 以後 個人所得稅 體系의 主要 構造的 變化

국 가	변 화
오스트리아	저소득 피고용자에 대한 보조금제도의 재도입(1993).
벨기에	법인 및 개인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동산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에 3% 추가과세(1993). 서울의 점진적인 인하. 1987 과세연도(1986년 소득)부터 자동적인 물가연동제 도입. 1991 과세연도(1990년 소득)부터 모든 개인소득세에 대해 자동적으로 물가 연동. 개인 생명보험, 연금저축 등에 새로운 조세("장기저축에 대한 조세") 도입(1993).
덴마크	비거주자에 의해서 실현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1993). 과세표준을 셋으로 구분: 근로소득(개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모든 소득(종합소득), 개인소득과 순자본소득의 합계에 대해 단일세율 적용(1987, 1993).
핀란드	소득을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 소득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 소득으로 구분.
프랑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의 확대(1986).
그리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세체계가 자동적으로 연동(1990).
아이슬란드	Pay-As-You-Earn(PAYE) 체제 도입(1988).
아일랜드	자진신고체제의 점진적 도입(1988).
이탈리아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결합신고 가능(1993).
네덜란드	세율체계의 자동적 물가연동제 도입(1990).
노르웨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과세표준 통합(1990). 고소득층의 총소득에 대한 세부담 증가(1988~1990). 과세표준을 둘로 구분: 모든 소득(일반 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이, 그 중 근로소득(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적용.
포르투갈	종합소득세제로 이행.
스페인	맞벌이 부부의 부부별산제 도입(1989). 가족단위의 과세에서 개인단위의 과세로 이행; 가족합산과세도 선택 가능(1992).
스웨덴	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영국	세율체계 및 기초공제의 자동적인 물가연동제 도입(1991).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1990). 자본 이득세 개혁(1988 - <附表 6> 참조).
미국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변화(1987). 세율계급의 축소와 세율 인하. 인적 및 표준 공제의 물가연동제. AMT(alternative minimum tax) 도입(1987).

<附表 9> 法人所得稅의 稅率構造 變化(중앙정부)¹

(단위: %)

국 가	기 본 세 율	
	1986년	1993년
호주	49	33
오스트리아*	30/40/50/55	34
벨기에 ⁴⁾	45**	39
캐나다*	36(15)**	29(13)
덴마크	50	38
핀란드*	33**(17)	19
프랑스	45	34
독일*	56	45
그리스	49	46
아이슬란드	51	45
아일랜드	40/50	40
이탈리아*	36(10)	36(10)
일본*	43**(19)	37.5**(19)
룩셈부르크*	40	33
네덜란드	42	40/35
뉴질랜드	45	33
노르웨이*	28(23)	28(23)
포르투갈*	42/47	36(3.65)
스페인	35	35
스웨덴	52	30 ⁵⁾
스위스 ³⁾	4~10	3.63~9.8
터어키	46	49
영국	35**	33
미국 ⁴⁾	15/18/30/40/46	15/25/35

註: * 하위수준의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임.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됨.

- 1)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지방 세율을 괄호안에 표시하였음. 캐나다(현재는 폐지되었음), 그리스,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 특정 산업 및 자격이 갖추어진 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낮은 세율은 고려하지 않았음.
- 2) 기업 및 개인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동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3%의 추징금("crisis contribution") 부과.
- 3) 연방세는 순이익에 대해 3.63%에서 9.8%의 세율로 부과됨. 일반적으로 연방세를 차감하기전 소득에 대한 주/지방정부의 최고세율은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와 35%임.
- 4) 10만달러와 33만3천달러 사이의 과세소득에 대해 5%의 부가세가 적용됨. 미화 1,500만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기업의 경우 3%의 부가세 부과(1993).
- 5) 1994년부터 기본세율은 28%임.

<附表 10> 감가상각제도(1993년)

국 가	감가상각 기준		감가상각 내용연수(년)		1986년 이후 최근의 변화
	SL=정액법 DB=정률법	AD=가속상각법	기계	건물	
	기계	건물			
호주	SL 또는 DB (rarely AD)	SL	5~15	25 또는 40	AD는 1988년 5월까지 대부분 폐지. AD는 1989년까지 완전 폐지. DB는 1992년부터 최고 40%까지로 제한됨. AD는 1988년 4월~1989년 4월 사이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75%로 그리고 1989년 이후에는 50%로 축소됨. AD는 1992년 4월 1일 폐지
오스트리아	SL;	SL;	4~40	40	
벨기에	SL; DB; AD	SL; DB; AD	3~10	20~33	
캐나다	DB;	DB	3~7	40 ¹⁾	
덴마크	DB	SL	7+ ¹⁾	30	
핀란드	DB	DB	7 ¹⁾	10~40 ¹⁾	
프랑스	SL; DB	SL	5~10	20	
독일	SL 또는 DB (rarely AD)	SL	10	25~50	
그리스	SL(rarely AD)	SL(rarely AD)	5~10	9~20	
아이슬란드	SL	SL	5~8	50	
아일랜드	DB 또는 AD	SL 또는 AD	5, 10, 20	10	
이탈리아	SL; AD	SL; AD	4~10	14~33	
일본	SL 또는 DB; AD	SL 또는 DB; AD	2~25	7~65	
룩셈부르크	SL 또는 DB	SL	10	20~70	
네덜란드	SL 또는 DB	SL 또는 DB	6~10	20~30	
뉴질랜드	SL 또는 DB	SL	10 ¹⁾	50	
노르웨이	DB	DB	5	20~50 ¹⁾	
포르투갈	SL; DB	SL	4~8	20~50	
스페인	SL; DB	SL 또는 DB	8~18 ²⁾	50 ²⁾	
스웨덴	SL; DB	SL	4~7	18~25	
스위스	SL 또는 DB	SL 또는 DB	5~7	25~100	
터키	SL 또는 DB	SL 또는 DB	4 ¹⁾	10~50 ¹⁾	
영국	DB	SL	4 ¹⁾	25	
미국	SL 또는 DB	SL	3~7	31.5	

註: 1) 내용연수는 $r(\text{정률법 상각률}) = 1/(\text{수명})$ 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계산하였음.

2) 최대 기간.

<附表 11> 一般 投資 支援制度(1993년)

국 가	일반 투자 소득공제	일반 투자 세액공제
호주	있음, 특정 공장 및 기계에 대한 투자액의 10%	없음
오스트리아 ²⁾	있음, 제조상 취득비용의 30%	없음
벨기에	있음, 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세율 변화 (최저 3%, 최고 10%)	없음
캐나다	없음	있음, 적격의 기계 및 설비에 대한 10%의 소규모사업 투자세액공제
덴마크	없음	없음
핀란드	있음, 투자유보 조항	없음
프랑스	없음	없음
독일	없음	없음
그리스	있음, 투자비용의 40~70%	없음
아이슬란드	있음, 투자유보 조항	없음
아일랜드	없음	없음
이탈리아	없음	없음
일본	없음	없음
룩셈부르크	없음	있음, 투자액이 최근 5년간의 평균을 초과할 경우
네덜란드	있음, 투자비용의 2~18% 사이 (최고한도액 내에서)	없음
뉴질랜드	없음	없음
노르웨이	없음	없음
포르투갈 ³⁾	없음	있음
스페인	없음	있음, 신규 고정자산
스웨덴	있음, 투자유보 조항 ¹⁾	없음
스위스	없음	없음
터키	있음, 투자비용의 20~70%	없음
영국	없음	없음
미국	없음	없음

註: 1) 마감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지분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료총액의 15% 상한액까지 특별 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음.

2) 1994년 4월 1일부터 15%로 경감.

3) 투자세액 공제비율은 1993년 10%, 1994년 8%, 1995년 6%임.

<附表 12> 經濟的 二重課稅에 대한 調整(중앙정부)

거의 또는 조정하지 않음	경제적 이중과세 축소				경제적 이중과세 완전 배제	
	법인 단계		주주 단계		법인 단계	주주 단계
전통적인 체제 ¹⁾	분리세율 체제(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부분적인 배당공제제도(배당액의 부분적인 소득공제)	부분 imputation체제(법인세의 부분 세액공제)	주식보유자의 부분적인 조세경감(국내 주주에 대해 부분적인 세액공제)	영세율 체제(배당소득에 대해 영세율 적용)	완전 imputation체제(법인소득세에 대한 완전 세액공제)
벨기에 ²⁾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독일 ³⁾	아이슬란드 ⁴⁾ 스페인 ⁵⁾ 스웨덴 ⁶⁾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⁸⁾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⁴⁾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¹⁰⁾ 터키 ¹⁰⁾	그리스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프랑스 ⁷⁾ 독일 ^{3,9)}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¹⁰⁾ 터키 ¹⁰⁾

- 註: 1) 이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그리고 법인 단계에서 조정을 하는 국가에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부분적인 소득공제를 허용함.
- 2) 벨기에는 주주단계의 조정에서 전통적인 체제로 이행하였으나 기존 사업부문에 투자한 주주에 대해서는 조정을 계속하고 있음(소위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를 조장하는 완화기법을 이용).
- 3) 독일에서는 두번째와 일곱번째 열의 제도가 모두 적용됨.
- 4)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자본금의 15%를 넘는 배당의 경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차감할 수 있음. 이 한도를 넘는 배당은 두 단계에서 모두 완전히 과세됨. 그러므로 아이슬란드는 세번째와 다섯번째 열에 모두 포함됨.
- 5) 스페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번째와 다섯번째 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주주에 대한 세액공제가 단지 10%(다섯번째 열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음)밖에 되지 않으므로 무시되었음.
- 6) 1993년에는 imputation체제에 의한 세액공제가 비거주자의 포트폴리오 투자에게로 확장되었음.
- 7) 프랑스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50%로 유지하면서 법인세율을 33%로 축소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였음.
- 8) 1986년부터 거주자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과세됨. 분리세율체제(두번째 열)는 1989년에 폐지됨.
- 9) 독일은 주주에게 완전 imputation을 허용하면서 법인단계에서 배당이익에 대해 유보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해 줌.
- 10) 법인세를 납부한 세후소득 배당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이는 이중과세조정이 때로는 부분적이며 때로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이유로 인해서 터키를 다섯번째 열과 일곱번째 열에 모두 포함시켰음.

<附表 13> OECD 會員國들의 附加價値稅率(1993년)

(단위: %)

국 가	저세율 ¹⁾	표준세율	고세율
오스트리아	10	20	-
벨기에	1, 6, 12	9.5	-
캐나다	-	7	-
덴마크	-	25	-
핀란드	-	22	-
프랑스	2.1, 5.5	18.6	22 ²⁾
독일	7	14	-
그리스	4, 8	18	36 ³⁾
아이슬란드	14	24.5	-
아일랜드	2.5, 12.5	21	-
이탈리아	4, 9	19	38
일본	-	3	-
룩셈부르크	3, 6	15	-
네덜란드	0, 6	17.5	-
뉴질랜드	-	12.5	-
노르웨이	11.11	22	-
포르투갈	0, 8	16	30
스페인	6	15 ⁴⁾	28
스웨덴	12	25	-
스위스 ⁵⁾	2	6.5	-
터키	1, 3, 8	12	15, 50, 60, 100
영국	0	17.5	-

註: -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경우.

- 1)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영세율 또는 면세제도 제외.
- 2) 이 세율은 1992년 4월 13일부터 효력이 폐지됨.
- 3) 이 세율은 1992년 8월 8일부터 효력이 폐지됨.
- 4) 1992년 8월 1일 이전에는 세율이 13%였음.
- 5) 1995년 1월 1일부터.